

提案制度의 由來와 運用

〈I〉

—美國 등 先行國의 職務發明制度를 中心으로—

1. 提案制度의 創始

提案制度로 통하는 被傭者의 發明에 關하여 褒賞金(award)制度를 처음으로 採擇한 것은 英國人인 윌리엄·데니(Willam Denny)이다.

그 目的은 褒賞金을 줌으로써 經營管理에 不可缺의 人間關係를 醸成하고 勞使協助를 促進시키는 데에 있었다. 그 당시 英國은 産業革命이 成熟하여 勞使間의 賃金紛爭이 한창이었으므로 이러한 渦中에서 脫皮하고 生産性を 提高하고자 궁리한 끝에 윌리엄은 1880년에 스코틀랜드의 던버어튼에 있는 자기의 造船所에 建義函을 設置한 후 從業員들의 아이디어를 創出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建義函을 설치하기에 앞서 종업원들에게 그들의 建義 즉 提案에 따른 아이디어와 포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關係委員會의 構成을 발표했다.

2. 美國制度의 沿革과 概要

英國에서 시작한 提案制度는 그 해에 美國의 에일·앤드·타운製造會社(Yale & Towne Manufacturing Co.)가 導入하였다. 여기에서는 價値 있는 發明에 대해서 賞與制度를 실시하여 採擇된 발명은 회사에서 讓受하는 權利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1888년에는 14개의 제안이 채택되고 賞與金으로 600달러가 支給되었다.

1881년에는 美海軍의 沿岸警備隊에서 이 제도를 채용했고, 1884년에는 내쇼날·캐시·레지스터商社(National Cash Register Co.)가 이 제도를 採用하자 이어서 各企業이 앞을 다투어 도입하여 마침내는 被傭者의 提案制度로 發展한 것이다.

1912년 7월 17일에 美國議會는 兵器廠의 僱用자들에게 定期的으로 現金에 의한 特別賞與制度가 許與되었다. 그 規定은 「兵器廠의 一部施設에 종사하는 직원이 製造工程 또는 製造設備의 改善이나 經費節減에 關하여 내놓은 提案에 대해서 現金褒賞을 陸軍長官이 認定하는 法律」이다.

그 후 1954년 9월 1일 合衆國 政府職員褒賞法으로 統合改正되어 生産에 대한 資材의 節約, 能率增進, 原價의 低減, 良質品の 創出 등에 關한 現金에 의한 特別賞與를 주게끔 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프트맨商社에서 現金상여제도를 채택하여 民間企業에 퍼지기 시작했다.

美國은 發明의 出願權이 獨創의이고 最初의 發明者에게만 있다는 發明者主義가 基本이 되어 있다. 그러나 被傭者 發明에 대하여는 企業內의 研究開發 또는 그 實施化가 盛行함으로서 그 발명의 權利 특히 實施權의 歸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1943년에는 僱用자가 勤務 中에 使用者의 負擔으로서 발명된 것은 그것이 使用者와 발명자간에 默契 또는 明文의 承諾이 되어 있어도 使用者가 그 발명에 대한 權利의 양도를 請求할 수가 없으며 다만 使用者는 實施料가 不必要한 通常實施權만을 取得할 수가 있다는 判例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발명자주의의 原則과 使用者와 僱用자라는 關係에 있어서 企業내 발명의 調和를 꾀한 것이며 이같은 실시권은 일반적으로 Shop right 라고 한다. 雇傭期間 中의 발명에 대한 Shop right의 性質, 範圍, 限界 등에 대하여는 그 후 오랜 時日을 두고 裁判過程에서 論爭의 焦點이 되었다.

1869년 피용자발명에 대하여 重大한 契機가 되는 判決이 있었는데 이는 羊毛工業에서 劃期的인 발명을 갖고 다룬 것이다. 이 事件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技能 및 機械의 熟練의 發揮를 통해서 피용자에게 어느 着想의 實시를 委託했을 경우에는 特許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支持한 것이 特徵이다.

20世紀에 들어서는 提案制度가 脚光을 받았으며 2次大戰 初期 戰爭에 필요한 彈藥이나 軍需品의 生産量을 急增시키는 戰時生産手段으로서 활용하기도 했다. 이때는 軍需省의 直接指導 아래 제안제도가 實施, 獎勵됨으로써 급속히 발전되었다.

1942년에는 全美提案制度協會가 結成되어 시카고에서 1次會議가 열렸다. 민간기업에서 피용자발명의 취급이 활발해지자 先發明者主義에 問題點이 提起되었고, 政府는 戰爭遂行에 對應하는 발명장려의 緊急性에 따라 國家的 科學의 能力을 動員하는 法律案이 國會에 提出된지 3년후인 1945년에도 結論이 나지 않은채 終戰을 맞았다.

그러나 政府는 特許論爭이 지루해지자 1943년 2월 5일자로 당시 루스벨트大統領은 法務長官에 指示하여 政府研究活動, 政府關係被傭者 및 受託者가 발명한 권리의 귀속, 그리고 피용자에의 報酬의 管理組織에 관한 政府特許實務의 綜合研究計劃을 짜게 했다.

그 후 各省間이나 同一省內에서 발명의 취급에 蹉跌이 있음이 발견되어 1947년에 法務長官은 당시의 트루먼大統領에게 「特許의 運用과 政策 研究(Investigation of Patent Practices and Policies)」라는 主題의 報告書를 제출하였다. 全 3卷 982面의 이 보고서는 피용자와 契約者에 관한 政府특허 및 發明政策으로 나뉘어 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1950년 1월 23일에 트루먼大統領은 「國家公務員의 發明에 관한 政府의 統一의 方針 및 그 施行」을 定하는 命令 10,096號를 公布하고 이에 依據하여 國家公務員 發明特許審査會(The Government Patent Board)가 設置되었다.

① 美法務長官의 報告書要旨(1947年)

루스벨트大統領의 지시에 따라 그 후 트루

먼大統領에게 보고된 法務部長官의 「特許의 運用과 政策 研究」에서 다음과 같은 施政策을 勸告하고 있다.

가) 政府는 정부직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이 아래와 같은 狀況에서 나왔을 때에는 모든 권리를 取得한다.

ㄱ) 근무시간 중에 발명된 경우

ㄴ) 그 施設, 設備, 資材, 情報, 時間 등 政府에 의하여 實質的인 지원을 받아 그 발명이 이루어졌을 때,

ㄷ) 그 발명이 이루어짐에 있어 정부직원의 公的職務에 직접관계가 있을 때

나) 이 외의 경우로는 政府의 원조를 받고 또는 발명과 직원의 公的職務 사이에 어떠한간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나 그 機關의 결정에 의거하여 政府의 特許行政官의 承認下에 발명의 모든 권리를 政府에 양도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할 수 없을 때에는 발명의 所有權은 政府에 대한 非獨占的, 取消不能, 實施料不要의 實施權이 一定期間 동안 公共에 필요하게끔 하는데 대해 피용자 또는 그의 讓受人側에 賦課된 義務를 條件으로 피용자에게 留保된다.

다) 그외의 경우 피용자는 모든 것을 現行法令에 따라 발명의 全權利를 保持할 수가 있다.

이같은 보고서는 實質的으로 農務省(The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傳統的 政策과 一致했다. 농무성에서는 世紀가 바뀌어야 피용자의 特許權이 政府에 양도되거나 또는 公共을 위해서 제공되도록 하였다. 또한 農무성은 발명이 피용자의 公的義務와 관계가 없이 그 자신의 시간을 소비해서 그의 비용과 설비를 이용하여 발명한 경우에도 政府에 실시권을 바친다는 조건으로 政府직원에게 權利를 留保하는 것이 許容되었다.

그 후 이에 대한 不滿이 일자 例外的 規定을 增設했으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다만 農무성 공무원의 발명에 관계되는 어떠한 종류의 植物特許도 農무성의 現行慣例에 따라 農무장관의 승인 없이는 出願해서는 안된다. (계속) □ C記 □